

불법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일곤* · 정귀영**

요 약

이 연구의 목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불법행위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고찰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업종의 불법적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 업종인 산업근거법인 경비업법 적용의 고려이다. 둘째, 해당업종 종사자에 대한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이다. 셋째,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와 같은 기존의 직업군을 새로운 직업군으로 창출하여 양성화하는 것이다. 넷째, 관할감독기관 선정과 엄격한 관리·감독이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An Illegality Detective Agency and Messenger Office

Kim Il Gon* · Jung Kwi Young**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what improvement for an illegality detective agency and messenger office. First, administrators or managers who are involved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make a full-fledged effort to gather information. Second, counseling or related programs should be provided for small and mid-sized security firms to guarantee thoroug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rd, Korea Security Association should improve the educational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resolve problems with this education currently provided for managers and employees of these companies.

Key words : Illegality, Detective Agency, Messenger Office, Improvement, Private Security

접수일(2011년 0월 0일), 수정일(1차: 2011년 0월 0일,
2차: 2011년 0월 0일), 게재확정일(2011년 0월 0일)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치안행정학회 하계학술세미나
발표내용을 수정·가필한 논문임

* 동아대학교/경찰경호학과

** 대구과학대학교/경호무도학과

1. 서 론

범죄의 다양화, 전문화, 잔혹화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게 된 현대사회의 범죄환경으로 인해 정부는 치안 유지와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국가민의 치안유지와 확보에 기능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반면 개인은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수준 향상으로 자신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개인의 안전욕구에 대한 관심 증가는 자신의 재산 및 권익보호 또는 다양한 정보 입수 등과 같이 생활의 모든 영역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미제를 나타내고 있는 실종자, 미아, 가출인 찾기와 같이 오랜 시간과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치안서비스의 경우 민원신청인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전문적인 조사 및 정보획득 활동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하거나, 개인 또는 기업 등과 같은 단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범죄자 및 신용불량자로부터 개인이 각종 범죄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경찰이 아닌 민간업자들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호에 의거 우리나라는 범죄문제와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민간이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인 민간의 조사 제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조사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영업의 적정성을 도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허점을 틈타 민원서류 대행이나 택배서비스 등의 단순 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이른바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 등이 근래 보안컨설팅 등의 간판을 내걸고 음성적으로 영업활동을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도를 넘어 개인사생활 조사, 불법 채권추심 등의 개인 인권침해는 물론 살인이라는 비인륜적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현재 불법행위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에 의한 불법적 행위 등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불법행위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고찰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의의와 현황

2.1.1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의의

홍신소는 “신용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주요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조사를 실시하는 곳을 의미한다[2]. 홍신소의 주요업무내용은 기업의 신용조사, 거래처의 신용조사, 결혼과 관련된 신용 조사 등이며, 조사원의 경우 상대에게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업무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탐정업의 경우 주요 업무내용은 행방불명자 찾기, 스토키, 도청기 발견, 불륜관계 조사 등이며, 탐정의 경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시간과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한다[3].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 홍신소와 비슷한 「신용고지업」이라는 것이 있어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법령으로 「신용고지업취체규칙」(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82호)이 있었으며, 1960년대 5·16군사혁명 이후 1961년 9월 23일 「홍신업단속법」이 제정되었다. 이때부터 신용고지업이 홍신업으로 변경되었으며, 홍신업이 현재의 민간조사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현재와 같이 당시에도 홍신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보원, 탐정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홍신소는 군사정권 시대에 법보다는 폭력을 이용하여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속칭 해결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 국민 정서상 ‘홍신업자=탐정’이라는 이미지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4].

또한 국세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소득표준 분류코드(코드번호: 749200, 종목 세분류: 탐정 및 경호업, 세세분류 탐정, 경호 및 경비업)에 따르면 개인 및 재산

을 위한 탐지, 감시, 경호 및 기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서 지문채취, 거짓말 탐지기 및 유사 서비스(사무실, 공장, 호텔, 극장 등의 경호 및 경비, 경호견 임대,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산업안전, 화재예방상담, 필체감정, 방범전문 산업 등의 서비스 포함)라고 정의하고 있다[4].

이후 1970년에 들어서면서 홍신업단속법을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수단으로 생겨난 것이 심부름센터이다. 법률적 개념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남이 시키는 일을 하거나 부탁을 받고 일을 대신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세금납부를 위한 사업체등록 외에는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있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2.1.2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현황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홍신업단속법을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수단으로 심부름센터를 만들어 유사영업을 계속 영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정일석(2008)[5]에 의하면, <표 1>과 같이 평균적으로 홍신소를 포함한 심부름센터는 전국에 2,650여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서류대행 및 심부름을 업으로 하고 있으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이윤으로 창출하므로 큰 수익을 얻기 못하게 됨에 따라 보다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업무를 원하게 되었고, 한편 개인의 뒷조사나 도청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의뢰인으로부터 다소 비용의 부담이 되더라도 이를 대행하여 줄 심부름센터를 찾는 의뢰자 또한 증가되어 결국 ‘필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심부름센터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불법행위를 대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는 불법도청,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침해, 불법채권추심, 협박(공갈), 청부살인 등 매우 다양하다[5]. 심부름센터의 단속 실적에 대한 내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만 심부름센터의 최근의 단속에 대한 자료는 이인기(2008)[6]에 의해 연구 자료가 최근의 자료이다.

<표-1> 지역별 심부름센터 현황

| 지역 항목 | 파란닷컴 | 네이버 | 렛츠114 | 평균 |
|----------|-------|-------|-------|-------|
| 서울 | 511 | 540 | 573 | 541 |
| 부산 | 242 | 249 | 214 | 235 |
| 대전 | 107 | 111 | 116 | 111 |
| 대구 | 104 | 108 | 86 | 99 |
| 광주 | 83 | 92 | 75 | 83 |
| 인천 | 133 | 138 | 114 | 128 |
| 울산 | 76 | 68 | 65 | 69 |
| 경기 | 551 | 552 | 651 | 584 |
| 강원 | 94 | 99 | 113 | 102 |
| 경남 | 194 | 216 | 192 | 200 |
| 경북 | 96 | 102 | 108 | 102 |
| 충남 | 72 | 89 | 78 | 79 |
| 충북 | 64 | 64 | 62 | 63 |
| 전남 | 85 | 88 | 95 | 89 |
| 전북 | 119 | 110 | 133 | 120 |
| 제주 | 24 | 25 | 35 | 28 |
| 합계 | 2,555 | 2,651 | 2,710 | 2,638 |

자료:이인기(2008: 15)[6]

<표-2> 심부름센터 단속 실적(단속기간: 05. 2.14 - 3.15)

| 구분 | 청부살인 | | 불법채권추심 | | 불법도청 | |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 합계 (구속) | 2 | 8 (8) | 177 | 336 (42) | 13 | 18 (4) |
| | 공갈·사기 | | 개인정보유출 | | 사생활침해 | |
| | 151 | 207 (12) | 154 | 230 (30) | 158 | 218 (33) |
| 총 계 | 계 | | | | | |
| | 건 | | | 명 | | |
| | 665 | | | 1,017(129) | | |

자료: 이인기(2008: 15)[6]

2.1.3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업무 유형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명확한 업무 유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의 조사(홍신소)와 관련하여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업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업무, 인터넷 문제 조사 업무, 각종 범죄대책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업무는 기업신용조사, 인사조사 및 채용조사, 각종행동조사, 채권채무조사, 반사회적세력 관련 조사, 사기행위 관련 조사 등이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업무는 불륜조사, 잠복조사, 결혼조사, 행방불명 및 소재조사, 스톡러 대책조사, 성추행 조사, 도청기발견 조사 등이며, 인터넷 문제 조사 업무는 명예훼손 및 비방 관련 조사, 옥션구매 관련 조사, 클릭 청구(검색 수 조회) 조사, 서비스 이용허위청구 관련 조사 등이며, 각종 범죄 대책에 관한 조사 업무는 방법기계 판매 및 설치에 관한 조사, 어린이 유괴 등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구분하고 있다[7].

<표 3>홍신소의 업무 유형

| 업무 유형 | 세부 업무 |
|---------------|---|
| 기업대상 조사 업무 | 기업신용조사, 인사조사 및 채용조사, 각종행동조사, 채권채무조사, 반사회적세력 관련 조사, 사기행위 관련 조사 |
| 개인대상 조사 업무 | 업무는 불륜조사, 잠복조사, 결혼조사, 행방불명 및 소재조사, 스톡러 대책조사, 성추행 조사, 도청기발견 조사 등 |
| 인터넷 문제 조사 업무 | 명예훼손 및 비방 관련 조사, 옥션구매 관련 조사, 클릭 청구(검색 수 조회) 조사 |
| 각종 범죄대책 조사 업무 | 방법기계 판매 및 설치 조사, 어린이 유괴 등 |

출처: 大阪府興信所(www.7a.biglobe.ne.jp)의 내용을 참고로 수정·가필함.

2.2 제외국의 민간관련 조사업

2.2.1 미국

미국에서는 1850년에 Allan Pinkerton에 의해 시카고 최고라 일컬어지는 ‘핑크턴 내셔널민간조사사무소’가 설립되었다(이동영, 1999: 101). 이후 관련 산업

은 점점 성장하여 1980년대 이후 매년 약 2배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46억불로 추정될 만큼 대규모 시장으로 형성되었다[8].

업무의 범위는 자유업의 형태인 민간조사원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업무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적인 업무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으로는 첫째, 미연방 혹은 주, 미연방의 영토 및 속령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 둘째, 특정인 신문, 취미, 행동, 사업, 신뢰성, 충실함 등, 셋째,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 분실 혹은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처분, 회수, 넷째, 인명 혹은 재산에 대한 화재, 모욕, 손실, 사고나 손해 또는 손상의 원인과 책임, 다섯째, 법정, 이사회, 공무원 혹은 조사위원회에 회부시 사용되는 증거의 확보이다[9].

교육과정은 전문대학 과정에 준하는 2년간(4학기) 약 1600시간의 연수교육을 통하여 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을 거쳐 민간조사원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최신장비의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보수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9].

끝으로 관리 감독기관과 관련해서는 그간 미국의 민간조사제도는 연방법을 기준으로 관리하였으나 각 주정부마다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면허 제도를 주 정부에서 이관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이관이 가능하게 된 것은 모든 관계법을 만족시켜야 하는 미국의 법의 기본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10].

2.2.2 영국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 수많은 민간조사원들이 국가의 공경비 인력인 경찰들과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누구나 민간조사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특별한 규제나 규정은 없다. 따라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직 경찰이나 퇴역 군인들이 해당 업에 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이런 인력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기술 등을 가르쳐 주는 민간조사원 학교들이 상당수 있어, 또 이런 교육을 통해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국가 직업 인증)를 취득할 수 있다[11].

민간조사원의 업무내용 규정은 첫째, 특정인물 또는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정보 수집, 둘째, 분실되거나 손상된 재산의 상황 또는 그로인한 피해에 대한 정보 수집이다. 더불어 민간조사원들의 영업 활동 영역은 대체적으로 소환장 송달업무, 보험사고 조사, 교통사고 조사, 결혼관련 조사, 범죄조사, 사기조사, 재산추적 등이 있다[12].

자격과 관련하여 영국은 2001년 5월 11일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법령에 민간조사원에 관한 조항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조사원 개인에 대한 면허취득과 더불어 사업소를 운영하는 민간조사 업자도 역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13]

교육훈련과정은 민간전문조사원 전문교육기관에서 습득할 수 있기도 하고, NVQ(국가직업인증)에 이력한 교육과 실전교육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 영국은 민간조사원 교육을 전문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며[13], 세부 교육훈련과정으로는 전문조사과정과 감시교육과정으로 구분되어 진다.

2.2.3 일본

일본의 탐정업은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한 법적 규제가 없어 조사 대상자의 비밀을 이용한 협박사건, 위법한 수단에 의한 조사, 비용시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탐정업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탐정업법을 제정하였다[14].

따라서 탐정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자는 업무 실시원칙을 마련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해당 내용으로는 업무의 실시원칙 및 규칙 준수, 비밀준수, 중요 사항 설명 등이 있다. 첫째, 업무의 실시원칙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법 제6조 및 제9조). 둘째, 타인의 안녕을 해하는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아니 되며, 셋째, 탐정업자는 업무 조사 결과가 위법한 범죄행위에 활용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경우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경우, 의심하지 않고

용인한 경우 이를 위법 사항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넷째, 탐정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탐정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수탁할 경우의 규제이다. 다섯째, 중요사항의 설명 등의 관계는 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여섯째, 비밀 유지 등의 관계에 대한 규제이다.

또한 부정 또는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자료보관 방법, 자료취급 가능자의 범위, 자료 반출 신청, 자료 복사 신청, 폐기 방법, 정보 시큐리티 보도 등에 관해 적절히 관리할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탐정업자가 고용한 고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선행연구 분석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사회적 이슈와 문제가 되어왔던 흥신소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는 김원중(2006)[15]의 연구 외에 연구주제와 일치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다만 해외의 사례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민간의 주도에 의해 합법적으로 의뢰인의 요청에 대한 민간조사업을 영위하는 업무의 도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 민간조사제도의 소개에 관한 연구,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민간조사원 선발과 교육 등에 관한 연구 중심이었다(이상원, 2011[9]; 조민상·김원기, 2012[16]; 조성구·김태민, 2012[17]).

우선 민간조사업의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된 연구는 전체 선행연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들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은 왜 민간조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하는지 필요성과 기존 민간조사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적절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철(2008)[18]은 연구에서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배경, 도입의 필요성과 규제방안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입법법안을 비교하며 향후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었을 필요한 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성제(2013)[19]는 연구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

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기에 업무범위 규정과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다음으로는 해외의 민간조사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제언을 한 선행 연구이다. 전대양(2006)[1]은 연구에서 민간조사제도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하여 200년 제정된 일본의 「탐정업업무의적정화에관한법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법안통과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영래(2009)[20]는 연구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민간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민간조사업의 현황, 업무범위, 자격, 교육, 법령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일곤은(2012)[21] 연구에서 2007년 일본의 「탐정업업무의적정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당 문제점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미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고려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불법행위 홍신소와 심부름센터의 근본적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연구참가자

질적연구방법으로는 문화기술지(집단, 개인의 문화적 행동 기술), 사례연구(사례에 대한 심층 연구), 전기(개인의 삶에 대한 자세한 묘사), 현상학(경험의 본질 기술), 근거이론(이론 또는 이론적 모델 제시) 등이 있다[22]

이 연구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수행하였고, 심층면담 내용을 질적 분석 과정(자료 전사-코딩-범주화-주제결정)으로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었으므로 탐색적 연구로서 질적 연구방법¹⁾을 선택하여 접근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의 전사 작업을 마친 후 프로그램

분석 과정에 따라 전사된 녹취록을 프로그램에서 단어, 구, 절, 문장, 문단 또는 아이디어를 노드(Node)로 범주화 하였으며, 전사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노드 또는 기존 노드에 해당 내용들을 범주화 시켰다. 이렇게 범주화 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범주화에 대한 확인은 연구 참여자 선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재검토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NVivo10을 활용하여 구축한 하위노드(Child node)와 상위노드(Parent node)를 단계적으로 형성하여 노드 간의 관계를 구조화해갔으며, 하위범주에서부터 상위범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범주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데이터를 일반화 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참가대상자들의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²⁾에 의해 선정하였다.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에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동의를 얻고 인터뷰 조사에 응한 종사자에 대해서 해당 업무 종사와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자 이들을 표집기준으로 정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국내 등록된 홍신소 및 심부름 센터 종사자 총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표 4>는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연구 참여자

| 항목 | 세부사항 |
|---------|--------------------------------|
| 참여인원 | 5명 (정식 등록된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 종사자) |
| 수집자료 유형 | 개인 심층 인터뷰 |
| 연령 | 30-50세 |
| 직위 | 직원 |

1) 일반화 되지 않은 연구 주제에 대하여 탐색적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적 연구방법이 양적 연구방법에 비하여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연구 이전에 연구 설계가 완전히 결정되는 양적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연구 작업에 대한 사항들이 구체화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23]

2) 질적 연구의 표집 방법 중 하나로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풍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3. 결과분석

<표 5>는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범주화하여 상위노드(Parents)와 하위노드(Child node) 개념에 대한 속성 관계를 표식화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상위노드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으며, 내용은 불법행위의 인식, 전문지식의 미비, 전문교육 미 실시이다.

먼저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업무상 인식하는 가장 빈도가 높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불법행위의 인식이었다.

<표-5>홍신소 및 심부름센터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인식

| 개념 | 상위노드 | 하위노드 |
|-----------------|--------------|---|
| 업무수행 시 인식되는 문제점 | 불법행위의 인식 (6) | 개인정보유출, 미행, 불법행위 조사의뢰, 과도한 비용제시, 증거자료확보, 위치추적 |
| | 전문지식 미비(5) | 관련 법 지식 전무, 기계장치 활용미비, 대인 대응 지식 전무, 정보수집, 동의 |
| | 전문교육 미실시 (4) |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 업무별 교육의 필요성 미인식 자격제도 필요성, 보수교육 도입 |

특히 개인정보의 유출, 미행, 불법행위 조사의뢰, 과도한 비용제시, 증거자료확보, 위치추적이 대표적인 하위노드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실시 되어 개인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의 종사자들은 의뢰자로부터 의뢰 받은 업무를 여전히 불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이다.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는 상황이며, 우선적으로 높은 비용을 제시한 의뢰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우리가 사장님이 시키는대로만 할 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A. 1-3).

▲사실 우리가 홍신소 업무를 한다고만 광고하고 합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업무를 의뢰하는 의뢰자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해결 할 수 없는 일들이야.....요즘 개인정보 보호법인지 뭐가 때문에 어디 우리일에 불법아닌게 있던 말이지.....그거 다 지키고 하면 일 못하지(C.. 2-5)

다음 상위노드는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 업무의 전문지식 미비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법 지식 전무, 기계장치 활용미비, 대인 대응 지식 전무, 정보수집, 동의라는 하위노드로 구성되어 졌다.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지식이 실제 종사자들에게는 매우 미비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특히 법 지식과 정보수집, 동의 등과 같이 법적인 지식의 미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수집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장치 조직의 미숙과 같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를 나타내고 있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겠다.

▲우리 회사는 임원은 우리 직원들에게 항상 경찰에 적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기밀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솔직히 일하는 사람도 많아봐야 두명 정도인데 무슨 기밀한 일이 되겠어요..그리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는게 내가 무슨 전직 경찰 또는 군 출신정도나 되면 모를까 고졸인데 무슨 전문지식을 있겠어요.....(D. 5-8)

▲일거리가 접수되면 제일 먼저하는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이며..얼마난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는죠....우리일은 도청하고 정보수집하고 그러는게 대부분이예요...그리고 회사보다는 개인이 많죠..특히 여성분들...그리고 전문 지식이래봤자 어려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편히 일합니다(E. 3-6)

마지막 상위노드는 전문교육 미실시에 대한 내용으

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 업무별 교육의 필요성 미인식, 자격제도 필요성, 보수교육 도입이라는 하위노드로 구성되어 졌다. 앞에서 언급한 상위노드 두 개에서 나타난 불법성행위와 전문지식 결여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보상작용의 인식으로 종사자 스스로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이미지가 대부분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해 보고자하는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겠다.

▲우리아 솔직히 일을 계속하는게 좋지...그러기 위해선 합법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일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고...특히 우리 홍신소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불법적 이미지의 대표적 업종인데..무언가 전문교육제도가 자격제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낫죠...(E. 5-7)

▲정부도 말로만 고용안정 새로운 직업군 개발 외치고 있지만...어디 그게 실제로 금방 됩니까? 안돼죠..그래도 뭐 자격증, 교육 이런거 하면 좋습니다...사고치는 불법 업종을 몇 개 때문에 기존의 신뢰 있는 업체들도 같이 죽어버리니까요...(B. 7-9).

5. 결론 및 제언

급격히 변화한 현대사회의 범죄환경으로 인해 정부는 치안유지와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국가민의 치안유지와 확보에 기능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범죄피해와 분쟁 가능성에 대한 예방을 국가의 공권력에 맡기는 것에 대해 치안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게 되었으며, 국가는 단순히 이전부터 공권력을 바탕으로 치안활동을 해왔으므로 앞으로도 독점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정책은 수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조사제도는 사회의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수의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범람하여 불법행위를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가가 이들에 대한 강압적 제재 또는 단속만 전진행정과 같

이 일시적으로 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의 조사업의 불법행위, 즉 불법행위를 하는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선진화라는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업무상 인식하는 가장 빈도가 높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불법행위의 인식이었다. 특히 개인정보의 유출, 미행, 불륜행위 조사의료, 과도한 비용제시, 증거자료확보, 위치추적이 대표적 하위노드로 확인되었다.

둘째,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 업무의 전문지식 미비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법 지식 전무, 기계장치 활용 미비, 대인 대응 지식 전무, 정보수집, 동의라는 하위노드로 구성되어 졌다.

셋째, 전문교육 미실시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미실시, 업무별 교육의 필요성 미인식, 자격제도 필요성, 보수교육 도입이라는 하위노드로 구성되어졌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 도출된 세 가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부 불법적 업체들 때문에 기존의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해 보고자하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양성화 및 선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업종의 불법적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 업종인 산업근거법인 경비업법 적용의 고려이다. 현재 국세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소득표준 코드번호: 749200, 종목 세분류: 탐정 및 경호업, 세세분류 탐정, 경호 및 경비업으로 동일한 서비스 코드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비스 또한 개인 및 재산을 위한 탐지, 감시, 경호 및 기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서 지문채취, 거짓말 탐지기 및 유사 서비스(사무실, 공장, 호텔, 극장 등의 경호 및 경비, 경호건 임대,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산업안전, 화재예방 상담, 필체감정, 방범전문 산업 등의 서비스 포함)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존 업자들에

대해 경비업법을 산업근거법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고 명확한 법령 준수 의무를 부여하여 기존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를 보다 양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해당업종 종사자에 대한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이다. 도출된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업무를 종사함에 있어 업자는 물론이고 종사자도 그 어떤 전문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해당 업무가 사회적으로 단순 업무라고 인식되어 지고 있지만 실제로 의뢰자가 요청한 다양한 정보수집 요구로 인해, 정보수집 기법, 기계적 장치 활용법, 수사기법, 증거 수집 방법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의 업체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등록하는 신규 업체들에게 전문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자격취득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해당 감독기관과 관련 협회간의 전문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 모색이 요구되겠다.

셋째,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와 같은 기존의 직업군을 새로운 직업군으로 창출하여 양성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홍신소와 심부름센터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민간조사업’이라는 신규 직업군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헛되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 정상화를 추구하며 정책을 수행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전반의 비정상적 사회현상(불법·음성적)을 법과 사회적 관습을 근간으로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나가지 못하고 있다.

넷째, 관할감독기관 선정과 엄격한 관리·감독이다. 현재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는 국세청에 과세 등록을 근거로 한 등록제이다. 그러나 같은 서비스 코드인 경비업자는 법인등록, 주요 시설 및 장구 준비, 경비업법 준수 의무와 더불어 관할감독기관인 관할지방경찰청에 의해 철저히 관리·감독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는 불법행위에 의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기 전까지 평소 관할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만성적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업자들에 대한 신고 및 허가 등을 경비업에 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할감독기관을 선정하여 엄

격히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이 연구는 불법행위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에 의한 불법적 행위 등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연구 한계점으로 연구대상자 지역적 한계와 조사 참여자의 일부 한계로 전체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현상으로 이해함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불법행위 홍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선진화 방안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기원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전대양. 민간조사업법안의 주용 쟁점에 관한 연구 -이상배·최재천 안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25-45, 2006.
- [2] <http://ja.wikipedia.org>. (검색일: 2014.6.20.)
- [3] 하라이치탐정사무소, www.haraichi.co.jp, (검색일: 2014.6.20.)
- [4] 나영민. "탐정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5] 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가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6] 이인기. 공인탐정,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 및 추진상황, 수사연구, 11: 15-35, 2008.
- [7] 大阪府興信所, www7a.biglobe.ne.jp, (검색일: 2014.6.20.)
- [8] 황정익.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5.
- [9] 이상원.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의 -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3(2): 161-186, 2011.
- [10] 강효훈. 외국의 사설탐정제도의 활용사례와 법적고찰. 「수사연구」, 210. 서울: 수사연구사, 2001.
- [11] 이동영. 「21세기 공인탐정이 된다.」, 서울: 굿인포메이션, 1999.
- [12] 김상균. 민간조사상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서울: 경찰청, 2007.

- [13] 신현주. 「탐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논문, 2007.
- [14] 日本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關する法律(平成18年法律第60号).
- [15] 김원중. 민간조사제도의 정착 및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7-55, 2006.
- [16] 조민상·김원기. 민간조사제도의 민간조사관 선발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1): 87-108, 2012.
- [17] 조성구·김태민.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2): 241-267, 2012.
- [18] 이승철.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255-276, 2008.
- [19] 조성제. 민간조사업법 제정과 조사대상자의 인권. 「한국경찰학회보」, 15(2): 147-175, 2013.
- [20] 이영래.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국내도입 및 선진국운용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6(1): 25-44, 2009.
- [21] 김일곤. 일본 탐정업의 현황과 시사점, 「융합보안논문지」, 12(5): 3-13, 2012.
- [22] 조홍식,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2011.
- [23]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2007.

[저 자 소개]

김 일 곤 (Kim, Il Gon)



2001년 용인대학사
2004년 일본오사카체육대학원 석사
2011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 박사
現동아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강의전담 교수

email : security@dau.ac.kr

정 귀 영 (Jung Kwi Young)



2006년 초당대학사
2008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
2012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 박사
現대구과학대학교 경호무도과
조교수

email : hapkido92@naver.com